

1. 개정이유

숲해설,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9116호, 2022. 12. 27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류 추가 및 서식 변경(안 제5조 및 관련 별지 제1호서식·별지 제2호서식·별지 제3호서식·별지 제4호서식 개정)

- 1)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등록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추가하고,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정비 함

나. 과징금의 징수절차 마련(안 제6조의2)

- 1)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하도록 함

다.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 추가(안 제6조의3 및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)

1)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상자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추가 함

※ 상기의 내용은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2023. 3. . ~ 5. .)
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사본”을 “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증명하는 서류”를 “증명하는 서류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과징금의 징수절차)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
제6조의3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)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1항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·전문업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 제1호 나목 중 “사본”을 “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증명하

는 서류”를 “증명하는 서류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1항 중 “주소”를 “주소 또는 전문업의 종류와 사무실 주소”로 한다.

라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·전문업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·전문업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제3호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·사무실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시설의 명칭”을 “시설·전문업의 명칭”으로 하고, “시설의 종류”를 “시설·전문업의 종류”로 하며, “시설의 주소”를 “시설·사무실의 주소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시설의 종류”를 “시설·전문업의 종류”로 하고, “시설의 명칭(법인명)”를 “시설·전문업의 명칭(법인명)”로 하며, “시설의 주소”를 “시설·사무실의 주소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과징금 []납부기한 연기
[]분할 납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0 일
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성명
	주소 (전화번호:)

과징금 부과명세	납부통지서 발행번호
	과징금 부과금액
	납부기한

신청사유

신청내용

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과징금([]납부기한 연기 []분할 납부)을(를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					
------	--	--	--	--	--

신청서	→	접수	→	확인	→	결재	→	통보
신청인						산림청장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) 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(이하 “한국산림복지진흥원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<u>사본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
3.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(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법률」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 증명하는 서류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(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과징금의 징수절차)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
제6조의3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)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.